

유럽 규제 대응

BAE, KIM & LEE LLC



유럽 규제 대응

미국과 중국 간의 점증하는 긴장관계, 우크라이나, 가자, 대만해협 등 세계 각지의 분쟁, 인류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발달 등은 글로벌한 성장과 도약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과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정부에게 막대한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고, 세계적 규제 기준을 선점하며, 불안정한 지정학적 역학관계에서 안정적으로 산업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반도체나 배터리 또는 핵심원자재 산업에 대한 지원,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역외보조금이나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인공지능법 등 다양한 규제와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강한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갖추어야 하는 사실상의 표준(소위 '브뤼셀 효과')이 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유럽에 수출, 투자 및 관련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과 정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갖추고, 공정거래, ESG, 인공지능, 통상 및 규제 등 모든 관련 분야에서 국내 어느 로펌보다 우수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BKL은 유럽 규제에 관한 소식을 적시에 전하고 한 발 빨리 분석하는 등 우리 기업의 유럽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really enjoyed working with the team. They had a good grip on what the regulators wanted and how we should shape our position."

- Chambers and Partners Asia-Pacific

"I am very satisfied with their work. The firm's strength is definitely their ties with the regulators."

- Chambers and Partners Asia-Pacific

"The team has a good reputation and relationship with the industry experts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which makes a big difference."

- The Legal 500 Asia Pacific

"Bae, Kim & Lee has a variety of experts and manpower in each field, and their understanding of related laws is very high."

- Chambers and Partners Asia-Pacific



RECENT HIGHLIGHTS (2025. 2. 4.자 기준)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

EU 역외보조금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s; FSR)

- 2021. 5. EU 집행위 제안, 2023. 1. 법안 발효, 2023. 7.(직권조사) 및 2023. 10.(사전신고) 시행
- EU 역내시장 경쟁 왜곡 방지를 위해 제3국으로부터 보조금 받은 기업이 EU 내에서 기업을 인수 합병하거나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규제 (우리 기업이 한국 아닌 제3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포함)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사전신고 → 경쟁 왜곡 등 인정되면 시정조치 부과
- 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조금으로 인해 경쟁 왜곡이 의심되면 직권조사 → 시정조치 부과
- 2024. 3. 1. 역외보조금 담당국(Directorate K) 신설 →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향후 FSR 집행 사례 증가 가능성

[사례]

- (2023. 9. 4.) 중국 국영기업 중처쓰팡, 불가리아 공공조달 절차 관련 사전신고; (2024. 2. 16.) EU 집행위, 중처쓰팡에 대한 심층조사 개시 (첫 적용 사례); (2024. 3. 26.) 중처쓰팡 입찰 참여 철회로 조사 종료
- (2023. 9. 27.) 중국 기업 참여 컨소시엄 2곳*,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 입찰 참여 관련 사전신고; (2024. 4. 3.) EU 집행위 심층조사 개시; (2024. 5. 13.) 컨소시엄 2곳 참여 자진 철회로 조사 종료
- * 에네보 컨소시엄(루마니아 ENEVO 그룹, 중국 기업의 독일 자회사 LONGi Solar Tech GmbH), 상하이 전기 컨소시엄(중국 국영기업의 완전 자회사 Shanghai Electric UK Co.Ltd., Shanghai Electric Hong Kong International Engineering Co. Ltd.)
- (2024. 4. 23.) EU 집행위, 중국 기업 Nuctech 폴란드 및 네덜란드 사무소 대상 현장조사; (2024. 8.) Nuctech 조사 중단 신청하였으나, EU 법원은 집행위의 조사권한 인정하여 신청 기각; (2024. 10.) Nuctech 항소 제기
- (2024. 4. 26.) UAE 국영 통신사업자 Emirates Telecommunications Group Company (e&), 네덜란드 통신사업자 PPF Telecom Group (PPF)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신고; (2024. 6. 10.) EU 집행위, UAE 정부의 보증 및 국영은행 대출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조사 개시; (2024. 9. 24) PPF 인수(체코 사업부문 제외) 조건부 승인

EU 디지털시장법 (Digital Markets Act, DMA)

- 2020. 12. 집행위 제안, 2022. 11. 발효, 2023. 5. 시행, 2024. 3. 모든 규정 적용
-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와 시장 독점 예방
-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게이트키퍼(Gate Keeper)*로 지정, 개인정보 보호 포함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위반시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 반복 위반시 최대 20%까지 부과 가능
- * 게이트키퍼(Gate Keeper): 게이트키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성적·정량적 기준 충족 필요; (정성 기준) 디지털 시장에 상당한 영향과 확고한 지위, 기업과 소비자 간 중요한 중개 역할을 하는 하나 이상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 (양적 기준)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이거나 EU 내 연매출이 75억 유로 이상이고, 3개 이상 회원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

[사례]

- 7개 글로벌 빅테크 기업(Alphabet, Amazon, Apple, Booking, ByteDance, Meta, Microsoft) 게이트키퍼로 지정
- (2023. 6.) Apple 아이폰 앱스토어 독점 및 제3자 서비스 미허용으로 소비자 선택권 제한, 탭앤고* 애플페이 독점, 최대 30%의 앱 결제 수수료율 등을 근거로 예비조사 실시; (2024. 4.) Apple, EU 27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아이폰 앱스토어 외 다른 앱스토어 이용 허용; (2024. 6.) 유럽에서의 앱 수수료 10~17%로 인하; (2024. 7.) 탭앤고 결제 기술 개방 결정으로 조사 종료
- * 탭앤고(Tap and Go):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기술로 단말기에 아이폰을 접촉하면 결제가 진행되는 시스템
- (2023. 7.) Microsoft 화상회의 프로그램 '팀즈(Teams)' 오피스 제품군 묶음 판매에 대해 예비조사 실시, (2024. 4.) Microsoft 팀즈 번들링 판매 중단 및 분리 판매 결정
- (2024. 5.) X(구 Twitter), EU 집행위 예비조사 결과 잠재적 게이트키퍼로 분류; (2024.10.) 최종적으로 미지정
- (2024. 9.) 삼성전자, EU 집행위 예비조사 결과 잠재적 게이트키퍼로 분류되었으나, 낮은 점유율 및 개방성 등 고려 최종적으로 미지정
- (2025. 1) EU집행위, 착수한 모든 사건 전면 재검토 중으로 조사 범위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

EU 디지털서비스법 (Digital Service Act, DSA)

- 2020. 12. 집행위 제안, 2022. 10. 최종 채택, 2023. 8. 시행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2024. 2. 모든 플랫폼 적용
- *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 직원 50명 미만, 연간 매출액 1천만 유로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
- 안전하고 신뢰받는 온라인 환경을 위한 통일적인 규정 마련
-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불법, 허위, 유해 콘텐츠에 대한 규제 준수 의무를 부과하며, 혐오 표현 및 성적 콘텐츠 차단을 포함한 세부 조치 요구
- 규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6% 과징금 부과, 반복 위반시 EU 내 사업 불가
- Google, Meta, X(구 Twitter), Tiktok 등 19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Bing, Google 검색엔진 사업자를 지정

[사례]

- (2024. 2. 19.) Tiktok 미성년자 콘텐츠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적용 여부 조사 개시
- (2024. 3. 14.) MS Bing, Google Search, Facebook, Instagram, Snapchat, Tiktok, Youtube, X(구 Twitter)에 딥페이크 위험 예방 대책 정보 제공 공식 요구; (2024. 5.) Microsoft에 추가 정보 제공 요구
- (2024. 3.)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가짜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판매, 미성년자 음란물 접근 차단 노력 부족 등 근거로 조사 개시
- (2024. 5. 16.) Facebook과 Instagram의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하여 Meta에 대한 조사 개시; (2024. 9.) Instagram 16세 미만 사용자의 경우 부모의 승인 없이 비공개 설정 변경 금지 조치
- (2024. 10. 31.) 중국 테무 불법제품 판매, 잠재적 중독성, 추천 알고리즘 방식에 대해 조사 개시

영국 디지털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 (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 DMCC)

- 2024. 5. 24. 채택, 2025. 4. 반경쟁적 행위 규제 및 CMA 권한 관련 규정 발효, 2026. 구독 관련 규정 발효 예상
- 전략적 시장지위(Strategic Market Status, SMS)*를 지닌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

* 전 세계 매출액이 2,500만 파운드 또는 영국 내 매출액 10억 파운드 이상인 기업으로 SMS으로 지정되면 5년간 유지됨

· 1) 디지털 시장, 2) 경쟁, 3) 소비자 보호로 구성되었으며, 독과점 해소, 허위 리뷰, 구독 함정 등을 규제

환경, 기후 위기 및 ESG

·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부과하는 행위요건을 준수하고 특정 거래 완료 전 CMA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 발생

· 위반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 또는 30만 파운드 중 더 높은 금액으로 과징금 부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 CBAM)

· 2024. 5. 24. 채택, 2025. 1. 1. 집행위 제안, 2023. 5. 발효, 2023. 10. 전환기간* 개시, 2026. 1. 시행*, 2030. 전체 산업 대상 시행

* 전환기간(2023. 10. ~ 2025. 12.) 중에는 분기별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담

·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고, 탄소배출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방지

· 6개 품목*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신고의무 부담, 불이행시 과징금 부과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품목으로, 추후 정유 및 유기화학 품목 등 추가 가능

· 대상 품목의 탄소배출량이 일정기준 초과하면 CBAM 인증서 구매해야 EU로 수출(통관) 가능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UK CBAM)

· 2023. 12. 영국 정부, 2027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계획 발표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품목 등에 우선 적용 가능성

EU 탄소중립산업법 (Net-Zero Industry Act, NZIA)

· 2023. 3. 집행위 제안, 2024. 4. 25. 유럽의회 승인, 2024. 5. 27. 유럽이사회 채택, 2024. 6. 29. 시행

· 규정(regulation)으로 회원국의 국내전환 없이 직접 적용

· 적용대상: 탄소중립기술,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탄소중립 혁신기술, 기타 혁신기술 등

·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재정지원을 위한 플랫폼 마련 및 공공자금 지원 관련 혜택, 인력 양성, 공급망 안정성 강화 등에 관한 규정 포함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 (Carbon Removal Certification Framework, CRCF)

· 2022. 11. 집행위 제안, 2024. 4. 유럽의회 승인, 2024. 11. 19 이사회 승인, EU 관보 게재 후 20일 후 발효 예정

· 탄소 제거 및 탄소 농업, 탄소 저장 활동 등을 위한 인증 프레임워크 수립 (자발적 프레임워크)

* 탄소 제거: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직접 공기 포집 저장

탄소 저장: 목재 기반 건축 자재

탄소 농업: 재조림, 습지 복원, 비료 사용 개선

- 독립적인 제3자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탄소제거활동에는 탄소제거 인증마크 부여
- 인증요건: 정량성(Quantification), 추가성(Additionality), 장기저장능력(Long-term storage),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 탄소 제거량을 정확하게 측정, 보고하는 '정량성', 새로운 탄소 제거 효과를 가져오는 '추가성', 다시 대기로 방출되지 않는 '장기 저장능력', 환경, 사회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

EU 배터리법 (Battery Regulation)

- 2020. 12. 집행위 제안, 2023. 8. 발효, 2024. 2. 18. 시행 (개별 의무마다 적용시기 상이)
- EU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역내 유통되는 배터리의 전 수명주기에 대한 포괄적 규제
- 1) 배터리 전 수명주기에 대한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및 등급 설정, 2) 폐 배터리 수거 및 원자재 회수 목표 설정 및 새 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2) 원자재 채굴 및 제조과정에서 사회·환경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사 강화, 4) 배터리 여권 및 라벨링을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
- * 탄소발자국: 제품의 전 수명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총량
- * 배터리 여권: 개별 배터리의 성능 및 화학 성분 등 특정 정보를 담은 전자식 기록
- EU 역내 유통되는 모든 이동식 배터리*(스마트폰, 전자기기 등), 전기차 및 차량용 SLI 배터리(시동, 조명, 점화 등), 경량 운송수단 배터리(전기자전거, 스쿠터 등), 기타 산업용 배터리(태양광 전지 등) 대상
- * 안보와 관련된 방산·우주산업 장비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미적용
- 탄소발자국 산출식과 등급 설정, 배터리 여권·라벨링 규격 등 세부준칙은 2024년-2028년까지 단계적 채택
- 2031년부터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최소 비율 설정, 2036년부터 비율 기준 상향
- 의무 위반시 배터리 역내시장 출시 제한 또는 금지, 회수 또는 리콜 등의 적합한 조치 수행
- (2024. 8. 18.) 독일, EU 회원국 중 최초로 배터리규정 이행을 위한 국내 배터리법 시행법(Batterierecht-Durchführungsgesetz, BattDG) 발효

EU 배기가스 배출 규제 (EURO 7 Standard)

- 2022. 11. 집행위 제안, 2024. 2. 의회 통과, 2024. 4. 12. 이사회 승인
- 2026년 하반기 승용차 및 경상용차(3.5톤 이하) 대상 적용, 2028년 상반기 상용차(버스, 트럭) 대상 적용
- 기존 EURO 6은 내연기관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만 규제 대상이나, EURO 7에 따라 2026년 하반기부터 전기차·수소차 비(非)배기 오염물질*을 규제 대상에 포함
- * 전기차·수소차는 매연이 발생하지 않으나, 타이어 및 브레이크 마모로 미세입자 발생
- 위반시 초과된 1g당 95유로의 과징금을 한 해 판매 대수만큼 부과, 판매 제한 및 금지 조치 가능
- 기존 규제 물질*에 더해, 최근 위험성이 부각된 암모니아, 아산화질소, 메탄 등 추가
- * 기존 규제 물질: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총 탄화수소, 비메탄 탄화수소

[사례]

- (2021. 1.) 폭스바겐, 2020년 당시 배기가스 배출 기준 95g/km에서 약 0.5g/km 초과로 1억 유로 이상 과징금

메탄배출감축규정 (Methane Emissions Reduction in the Energy Sector)

- 2022. 4. 집행위 제안, 2024. 3. 의회 통과, 2024. 4. 이사회 채택 및 발효
-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메탄배출 30% 감축을 목표로 한 ‘글로벌 메탄서약(COP28 서명)’의 이행
- 2025. 1. 석유·가스 및 석탄 설비에서 불필요한 가스 연소(flaring) 금지, 대기방출 2027년부터 금지
- 석유·가스 및 석탄 사업자, 운영 과정에서 메탄 배출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완화 조치 의무
- 수입업자는 원유, 천연가스 및 석탄의 메탄 배출량에 관한 정보를 주무기관에 보고
- 대상자는 관련 국가 당국에 메탄 누출 감지 및 수리 계획을 제출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누출 감지 및 수리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누출이 감지된 직후 또는 5일 이내 관련 조치를 이행

EU 산림벌채규정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EUDR)

- 2021. 11. 집행위 제안, 2022. 12. 의회-이사회 잠정합의, 2023. 4. 의회 통과, 2023. 6. 발효, 2024. 12. 시행 연기*
- * 2024. 12. 30. 에서 2025. 12. 30.로 1년 연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6. 6. 30. 적용
- 산림 전용으로 생산된 커피, 코코아, 소고기, 팜유, 고무, 목재, 대두 등 7개 품목 및 파생상품 규제
- 대상 제품의 공급망 관련하여 생산국·생산지의 지리적 위치, 인권·생산지 주민 권리보호 여부, 부패방지법 준수 여부 등을 입증한 실사 보고서 제출 의무화
- 위반시 EU 역내 판매 금지, EU 역내 매출의 최소 4% 과징금 부과 가능

EU 배출권거래제 (Emission Trading System, EU-ETS)

- 2005. 1. 제1차* 도입, 2022. 12. 제4차* ETS 개정안 잠정 합의, 2023. 6. 개정안 발효, 2024. 12. 개정안 시행
- * 제1차 2005. 1. ~ 2007. 12., 제2차 2008. 1. ~ 2012. 12., 제3차 2013. 1. ~ 2020. 12., 제4차 2021. 1. ~ 2030. 12.
- ETS를 통해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62% 감축, CBAM 적용 대상 품목에 대한 무상할당을 단계적 축소하고 2034년 이후 전면 폐지
- 배출권 수입으로 조성되는 혁신기금(Innovation Fund)에서 탈탄소화와 에너지 프로젝트에 48억 유로 투자
- 제4차 ETS 대상에 해상운송 부문 포함, 건물 및 도로수송 부문에 대한 별도의 ETS2 2027년 도입

[해상운송 부문]

- EU/EEA에 기항하는 총톤수 5천톤 초과 선박에 대해 GHG 배출권 구매 및 관리당국 제출 의무 부여, 2027년 이후부터 5천톤 이상 해양지원선(Offshore service vessel)에도 적용 예정
- 현재 규제 대상은 이산화탄소이나, 2026년 메탄과 아산화질소 포함 가능
- 배출권 구매 비율: 2025년 40%, 2025년 70%, 2027년 100%로 단계적 적용
- 적용 범위: EU 역내 항해는 배출량 100%, EU-비EU 국가간 항해는 배출량 50%

EU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 2021.4 집행위 제안, 2022.11. 승인, 2023. 1. 발효. (18개월 내 자국 법률 전환 필요)
- 기존 비재무정보공시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 대체
- 2024년부터 EU 상장 대기업 대상 우선 적용, 상장 중소기업 2027년부터 적용대상에 포함, 비상장 중소기업은 자발적 보고 대상이므로 CSRD 적용대상 해당되지 않음

- 비EU 기업 중 EU 역내 매출 4천만 유로 이상 지점/상장종속 기업을 보유하거나, 과거 2년간 EU 역내 연속 순 매출 1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 글로벌 전체 연결 기준으로 보고 의무(2029. 1. 적용)
 - 대상기업 ESRS(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따라 82개 주제 표준 중 이중 중대성 평가에 입각하여 공시
 - CSRD/ESRS를 준용하여 공시한 경우, EU CSDDD(공급망실사지침) 및 그린 택소노미 공시 부분 면제 가능
 - (2025. 2.) EU 집행위, 공시 관련 규제* 간소화를 위하여 옴니버스 규제 방식의 방안 발표 예정
- * CSRD, CSDDD, EU Taxonomy 대상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

- 2022. 집행위 제안, 2023. 7. 승인, 2024. 1. 시행, 특정부문 및 제3국 기업의 보고의무 2026. 6.로 연기
 -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등 12개 기준 관련, 적용 대상 기업은 자사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보고
 - 이중 중대성 평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방식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사회·환경적 중대성)과 외부 요인이 기업의 재무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재무적 중대성) 고려
 - Set 1 & 2로 구성되며, Set 1*은 모든 산업군의 기업이 공시해야 할 기준으로 공개된 상태. Set 2는 업종별 세분화된 기준으로 2026년 이후 공개 예정
- * Set 1: 일반 기준(일반 교유사항 및 공시 사항)과 주제별 기준(E·S·G)으로 나뉨

EU 택소노미(Taxonomy)

- 2018. 3 집행위 제안, 2020. 7. 발효, 2022. 1. 금융 및 비금융 기업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2023. 1. 환경 목표 공시 의무, 2024. 12. 그린본드 규정(Green Bonds Regulation)* 채택
- * 기업 및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EU 택소노미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인증 체계 마련
- 6개 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
- 1) 기후 변화 완화(Climate Change Mitigation), 2) 기후 변화 적응(Climate Change Adaptation), 3) 수자원 및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보호, 4) 순환 경제로의 전환, 5) 오염 방지 및 관리, 6)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 2024년 EU 상장 대기업 택소노미 적합(Taxonomy-aligned) 매출액, 자본적 지출(CapEx), 운영 비용(OpEx) 공시 의무, 2025년 기업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기준(CSRD)과 연계되어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금융기관 등에도 확대 적용 예정
- 2022. 2.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녹색에너지로 분류, 2023. 1.부터 적용
- 2023년 ~ 2024년 택소노미 연계 자본 투자 총액 4,400억 유로(약 657조원) 집계, 독일 역내 기업 1,140억 유로로 가장 많은 연계 투자 진행*, 업종별로는 전체 투자금 중 전력 공급업체가 절반 이상* 차지
- * 독일 1,140억 유로, 프랑스 630억 유로, 스페인 600억 유로, 이탈리아 480억 유로 순
- * 전력(57%), 소비재(18%), 산업재(11%), 에너지(6%) 순

EU 에코디자인 규정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 2022. 3. 집행위 제안, 2023. 12. 이사회-의회 잠정 합의, 2024. 5. 28. 승인, 2024. 7. 18. 일부 발효
- 2020 순환경제 행동 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유통·판매자가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준수해야 하는 환경 및 에너지 효율에 관련된 요구사항 명시
- 가전,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보다 적용범위 확대하고, 지침이 아닌 규정으로 채택
- 제품의 생애주기 동안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재활용 촉진, 제품의 지속가능성 증진

- EU 역내 유통되는 모든 물리적 제품의 이력 정보를 디지털화 하여 공유하는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 2027년 중순 우선 적용 품목 우선 도입 예정
- 섬유·철강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2027년 중순부터 적용 전망

제품수리촉진공동규칙지침(Common Rules Promoting the Repair of Goods Directive)

- 2023. 3. 집행위 제안, 2024. 2. 3. 합의, 2024. 6. 13. 채택, 2024. 7. 30. 발효, 2026. 7. 31까지 자국 규정으로 전환 필요
- 상품의 조기 폐기로 인한 환경 영향 감축, 통일된 규칙을 통해 거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발표
-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및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 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진하고 순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EU의 종합적인 전략의 일환
- 제품의 재활용 촉진, 환경 피해 감소,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강화 등을 위해, 보증기간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최대 10년) 제조사에게 일정한 수리 의무(Repair Obligation) 부과.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교체비용보다 수리비용이 높은 경우, 수리 대신 교체 선택 가능
- 모든 소비자(세탁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등 기술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제품) 대상으로 적용

EU 그린 클레임 지침 (Green Claims Directive, GCD)

- 2023. 3. 집행위 제안, 2024. 3. 의회 동의, 향후 이사회 승인 및 자국법 전환 필요
- 공정 상업 관행 지침(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UCPD)* 개정을 통해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 * 2005년 도입된 지침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업적 정보가 오해의 소지가 없고 공정하며 투명하도록 보장
- 기업의 그린워싱을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친환경성 표기 관련 전과정평가(LCA)별 환경 영향 입증 의무화
- EU 역외기업도 EU 시장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친환경성을 표기할 경우, 과학적 근거를 입증하고 독립 검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필요
- 탄소배출 감축노력 없이 탄소상쇄제도*에만 의존한 친환경표시 금지. 또한,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Carbon Removals Certification Framework) 인증 의무 부여
 - * 탄소상쇄제도(carbon offsetting schemes): 청정에너지 기술 도입, 탄소 배출권 매입, 나무 심기 등
- 기업은 친환경성 근거를 웹 링크 또는 QR 코드 등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
- 위반시 연간 매출 최대 4%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및 공공지원 배제 조치 가능
- EU 에코라벨(Ecolabel), EU 에너지 효율 라벨(Energy Efficiency Label), EU 유기농 생산 및 라벨링(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등 기존 EU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중복 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침 적용되지 않음
- 소비자집단소송지침(Representative Actions Directive)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이 기업 대상으로 법적 조치 가능
- 프랑스, 2023년 기후·복원력법(Climate and Resilience Law)을 통해 그린워싱 규제 강화

영국 그린 클레임 코드 (Green Claims Code, GCC)

- 2021. 9. 영국 경쟁시장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 발표
- 친환경주장(Green Claim)에 대한 6가지 행동원칙*을 담은 시행지침으로,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사실 전달하고, 중요한 정보 공개 필요

- * 1) 진실하고 정확해야 함: 기업은 자사의 제품, 서비스, 브랜드 및 활동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도록 해야 함
- 2)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함: 소비자가 제품의 메시지에서 받아들이는 의미와 해당 제품이 실제로 갖춘 친환경적 특성이 일치해야 함
- 3)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숨기지 않아야 함: 특정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됨
- 4) 공정하고 의미 있는 비교만 해야 함: 비교 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거나 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함
- 5)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를 고려해야 함: 친환경적 주장(그린 클레임)을 할 때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적인 환경 영향을 고려해야 함. 특정 부분만 강조하고 전체적인 영향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음
- 6)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함: 기업은 자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고 최신의 강력한 증거를 확보해야 함

[사례]

- (2022. 7.) ASOS, Boohoo, George at Asda 등 패션 소매업체의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친환경주장에 대한 조사 착수; (2024. 3.) 환경 관련 주장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만들도록 공식적인 합의(Undertakings) 체결 후 종료; (2024. 9.) 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패션업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 (2023. 12) 유니레버(Unilever) 도브(Dove) 비누에 대해 친환경 주장이 과장되었다는 우려로 조사 착수; (2024. 11.) 제품 포장에 대한 주장을 수정함에 따라 조사 종료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부여 지침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Directive, ECGT)

- 2022. 3. 집행위 제안, 2023. 9. 잠정 합의, 2024. 1. 의회 통과, 2024. 3. 27. 발효, 26. 9. 27. 시행 예정
- 그린워싱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으로 'EU 그린클레임 지침(GCD)' 기반 녹색 제품의 요건 구체화*
- * 소비자권리지침(Consumer Rights Directive), 불공정거래관행지침(Unfair Commercial Practice Directive) 개정
- 과학적 검증 없이 제품에 '친환경적(environmentally friendly)', '자연적(natural)', '생분해성(biodegradable)', '기후중립(climate neutral)', '에코(eco)' 등의 표기 금지
- EU 역내에서는 지속가능성 라벨 사용이 공식 인증제도 또는 공공당국이 설립한 라벨에 한해 허용
- 탄소배출 감축노력 없이 외부적인 탄소 상쇄에만 의존한 경우, 기후중립(climate neutral) 등 친환경 표기 금지

ESG 용어 펀드 명칭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funds' names using ESG or sustainability-related term)

- 2022. 11. 유럽증권시장청(ESMA) 초안 발표, 2024. 5. 최종지침 발표, 2024. 11. 21. 발효
- 펀드 명칭에 전환(Transition), 거버넌스(Governance), 사회(Social), 환경(Environmental), 임팩트(Impact),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관련되거나 파생된 용어* 사용시, 투자 기준 및 투자금지기업 정의
- * 1) 전환: transitioning, transitional 등/improve, progress, evolution, transformation, net-zero 등, 2) 거버넌스: green, environmental, climate 등, 3) 사회: social, equality 등, 4) 거버넌스: controversies 등, 5) 임팩트: impacting, impactful 등, 6) 지속가능성: sustainably, sustainability 등
- ESG, 지속가능성 관련 용어를 사용 시 투자 자산 80% 이상 환경 및 사회적 기준 부합 필요
- 투자금지기업에는 ESG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탄소집약적 산업에 속한 기업 등이 포함될 수 있음

기술/개인정보

EU 반도체법 (European Chips Act, ECA)

- 2022. 2. 집행위 제안, 2023. 9. 발효 (개별 회원국 시행계획 미완성)
- 경제안보 핵심품목인 반도체의 역내 생산역량 강화 및 높은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도입.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30년까지 10%에서 20%로 확대 목표
- 1) 연구 및 기술 주도권 강화, 2) 반도체 자체 벨류체인 구축 강화, 3) 공급망 관리 및 국제협력 추진전략 수립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신 반도체 기술 개발과 연구·혁신 지원 위해 공공 및 민간 투자 자금 430억 유로 조성
- (2024. 08.) 대만 반도체기업 TSMC 독일 드레스덴 내 반도체 생산공장 착공, EU 역내 반도체 보조금 역사상 최대 규모인 7조원 승인
- (2024. 09.) 미국 반도체기업 인텔은 독일 마그데부르크에 공장 신설 계획을 세웠으나 최근 실적 악화 및 비용절감 방침에 따라 2년간 건설 중단 선언

EU 인공지능법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 Act)

- 2021. 4. 집행위 제안, 2024. 3. 의회 통과, 2024. 5. 이사회 승인, 2024. 8. 발효, 2026. 8. 전면 시행 예정
- 고위험 AI 시스템*으로부터 인간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법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호와 더불어 역내 혁신 촉진
- * 핵심 인프라, 교육, 필수 민간 및 공공 서비스(의료 및 은행 서비스 등)·사법 및 민주 절차(선거 등)와 관련한 AI 시스템
- 금지된 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한 제공자,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직전 회계연도 글로벌 연 매출액 7% 중 높은 금액으로 과징금 부과
-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의무를 위반한 제공자(대리인 포함), 배포자 및 수입·유통업체,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직전 회계연도 글로벌 연 매출액 3% 중 높은 금액으로 과징금 부과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 2016. 5. 제정, 2018. 5. 시행*
- * 1995년부터 시행된 EU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대체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보호를 위해 기존의 지침(Directive)이 아닌 법률로서 모든 EU 회원국에 직접적인 적용되어 구속력을 지님
- 개인정보보호 대상은 정보 주체인 '살아 있는 자연인'의 개인정보에 국한됨. 국적·거주지에 관계없이 개인정보 처리 관련 '개인'에게 적용.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하여서는 개별 회원국이 별도 조항 적용
- 개인정보 침해사실 인지 후 감독기구에 72시간 내에 통지할 의무, 일반적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 2% 또는 1천만 유로 중 더 큰 금액 과징금 부과, 더 중대한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더 큰 금액 과징금 부과, 조직 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 DPO) 지정 등의 의무 및 책임 부과
- * 일반적인 조항: 데이터보호책임자(DPO) 적절한 데이터 보호 설계 및 기술적 조치 미준수, 미지정, 데이터 처리 활동 기록 유지 의무 미준수,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보고 의무 미이행 등의 데이터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의 의무
- * 중대한 조항: 데이터 처리의 기본 원칙 위반,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제3국 전송 규정 위반, 감독 기관 명령 불이행 등
- EU 역내 기업뿐 아니라 유럽 시민에게 서비스 및 제품을 공급하는 역외 기업에도 적용
- 영국은 자국 UK GDPR, 개인정보보호법 2018(Data Protection Act, DPA 2018), 프라이버시 전자통신 규정(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ion 2003, PECR)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준수 요구

공급망

공급망 실사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 2022. 2. 집행위 제안, 2023. 12. 이사회-의회 잠정 합의, 2024. 3. 이사회 승인, 2024. 4. 의회 통과, 2026년까지 국내법으로 전환 예정 (실사의무는 202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 확대)
- 주요 실사 내용은 인권과 환경이며, 강제노동 및 환경 침해 등 실사 의무 미준수시 전 세계 순매출액 5% 이상의 과징금 부과
 1. 인권: 생명권, 자유권, 노동권, 아동노동 금지 등
 2. 환경: 생물다양성, 폐기물, 오염물질,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해양, 습지 등
- 공급망 실사지침 대상은 크게 EU 역내·역외 기업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상세 내용은 하기와 같음:
 1. EU 역내 기업: 1) 임직원 1천 명 초과, 2) 전 세계 순 매출액 4.5억 유로 초과인 경우.
EU 역내 로열티 수익 기업: 1) 프랜차이즈·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수익 2,250만 유로 및 전 세계 순 매출액 8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
 2. EU 역외 기업: 1) 임직원 수 기준 없이 2) 전 세계 순 매출액 4.5억 유로 초과인 경우 실사의무
EU 역외 로열티 수익 기업: 1) 프랜차이즈·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수익이 2,250만 유로 및 EU 역내 순 매출액 8,000만 유로 초과인 경우
- 2017. 3. 프랑스 기업 경계의무법(Corporate Duty of Vigilance Law) 시행, 2023. 1. 독일 공급망 실사법(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SCDDA) 시행 등 기존 EU 회원국의 공급망 관련된 규제 기존재
- (2025. 2.) EU 집행위, 공시 관련 규제* 간소화를 위한 옴니버스 방식의 방안 발표 예정
 - * CSDDD, EU Taxonomy, CSRD를 대상으로 실시
- 국내 기업은 CSDDD 대상 기업의 공급망에 속할 경우 실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권 및 환경 리스크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필요

EU 핵심원자재법 (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

- 2023. 2. 집행위 제안, 2023. 11. 잠정 합의, 2023. 12. 의회 채택, 2024. 3. 이사회 승인, 2024. 5. 23. 발효
- 핵심·전략원자재* 전 벨류체인별 제3국 수입 의존도 65% 이하 감소를 목표로 2030년까지 역내 전략원자재 채굴 역량 EU 연간 수요 대비 10%, 제련 및 정제 역량 40%, 재활용 역량 25%까지 확대 목표
 - * 핵심 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 대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리튬, 마그네슘 등 총 34개 지정
 - * 전략 원자재(strategic raw materials): 34개 핵심 원자재 내 리튬·마그네슘·희토류 등 친환경·디지털·안보·우주 산업 등에 관련된 17개 항목 별도 지정. 목록은 법안 발효 후 3년 주기로 업데이트 예정
- 역내 전략원자재 공급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 '전략 프로젝트(Strategic Project)'로 지정(2025년 1분기 중으로 선정 프로젝트 발표 예정), 인허가 절차 간소화(채굴 관련 신규 사업 27개월, 가공·재활용 관련 사업 15개월 이내로 단축),
- 기업 리스크 대응 관련 역내 전략원자재를 사용하여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 전송 및 저장, 로봇틱스, 드론,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기업은 최소 3년 주기로 공급망 감사 및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후 이사회 보고 의무
 - * 공급망 스트레스 테스트(supply chain stress-test): 기업의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시나리오별 취약성을 평가하여 잠재적인 리스크를 식별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프로세스

▣ 유럽연합 입법 절차

EU의 규정(Regulation)*과 지침(Directive)** 등 입법을 위해 집행위원회(Commission)의 제안, 제안된 입법안에 대한 의회(Parliament)와 이사회(Council)의 협의 및 최종 승인 필요, 관보 게재 후 일정 기간 후 발효

* 규정(Regulation) - 회원국의 국내입법 필요 없이 EU 역내에 구속력 발생

** 지침(Directive) - 회원국의 국내입법절차(국내법 전환) 필요

PROFESSIONALS

통상 및 규제



허경욱 고문
T 02.3404.7504
E kyungwook.hur@bkl.co.kr



임성남 고문
T 02.3404.0576
E sungnam.lim@bkl.co.kr



김지이나 변호사
T 02.3404.0698
E jeena.kim@bkl.co.kr



권소담 변호사
T 02.3404.7651
E sodam.kweon@bkl.co.kr



한창완 변호사
T 02.3404.1076
E changwan.han@bkl.co.kr

환경, 기후위기 및 ESG



정연만 고문
T 02.3404.7511
E yeonman.jeong@bkl.co.kr



방종식 외국변호사
미국 New York주
T 02.3404.7588
E jongsik.bang@bkl.co.kr



이윤남 변호사
T 02.3404.0687
E younnam.lee@bkl.co.kr



김진호 외국변호사
미국 Oregon주
T 02.3404.0282
E jinhyo.kim@bkl.co.kr



곽시명 공인회계사
T 02.3404.0581
E seemyung.kwack@bkl.co.kr



이연우 전문위원
T 02.3404.7351
E yeonwoo.lee@bkl.co.kr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



강일 변호사
T 02.3404.0689
E il.kang@bkl.co.kr



김규식 변호사
T 02.3404.0945
E kyusik.kim@bkl.co.kr



최휘진 변호사
T 02.3404.6406
E hwjin.choi@bkl.co.kr

개인정보보호와 인공지능(AI)



강태욱 변호사
T 02.3404.0485
E taek.kang@bkl.co.kr



윤주호 변호사
T 02.3404.6542
E juho.yoon@bkl.co.kr

기업법무, 컴플라이언스 및 아웃바운드



이범주 변호사
T 02.3404.0843
E alan.pj.lee@bkl.co.kr



손지영 외국변호사
미국 New York주
T 02.3404.0241
E jiyoung.sohn@bkl.co.kr



서원민 외국변호사
독일
T 02.3404.0246
E michael.suh@bkl.co.kr